

2020년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충남형 장수 소상공인(충남행복가게)을 육성하고자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가업승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 신청자격: 가업승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내 소상공인

가업승계 자격요건	① 동일한 업종(업태)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대 이상 사업을 계속 진행한 소상공인 ②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19년 5월 31일(포함) 이전인 소상공인(사업 영위 1년 이상)
----------------------	---

* 소상공인 요건(소재지, 고용인원, 매출액을 충족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인 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고용인원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
 - 그 밖의 업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참조 1]

< 지원 제외대상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참조 2]
- ✓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 본인명의로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 2015년~2019년 충청남도 가업승계 지원사업 선정업체

2. 지원규모 : 5업체

3. 지원내용

- **충남행복가게(Chungnam Happy Store)**로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3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시설개보수, 홍보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지원금 최대 8백만원 지원
- 제품, 가게 홍보영상 제작 및 인근 영화관 송출
- 애로분야 혹은 희망분야 전문가 자문 지원
- ‘충남행복가게’ 인증 기간 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4. 상세 지원 방법

(경영지원금 지원)

- 사용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0. 10. 20.(화)까지
- 사용분야: 시설개보수, 장비·프로그램 구입, 디자인, 인증, 홍보·마케팅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지원,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자부담

(홍보지원)

- 홍보영상 제작(제품 및 가게 소개 등, 30초 ~ 1분 내외)
- 제작된 홍보영상은 선정업체 인근 영화관에서 광고 진행(영화시작전)
-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판수여식 진행

(전문가 자문 지원)

-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 매칭·자문 진행

(충남행복가게 인증 및 후속 지원)

- 인증 유효기간을 부여(2020. 8. 1. ~ 2022. 7. 31. / 3년)
- 인증현판은 진흥원에서 일괄제작 후 배포(업체별 현판제막식 진행)
 - ※ 2019년부터 충청남도 가업승계지원 인증명칭이 「충남행복가게」로 변경됨
- 유효기간 內 충청남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6. 1.(월) ~ 6. 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우편 및 방문,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주 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sbizcenter@naver.com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업체 기본 정보	지원 신청서	-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3	신고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2대 이상 전부 제출
4	가족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5	가업승계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전대 사업자 미폐업시 가업승계 불인정
6	소상공인 여부 확인 (고용인원)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www.4insure.or.kr)	고용인원 1명 이상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www.nhis.or.kr)	고용인원 없는 경우
7	소상공인 여부 확인 (매출규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텍스)	최근 2년 (2018년 / 2019년)
8	가점항목	기관·단체(정부·지자체 등) 표창, 기부 및 봉사 활동 증빙 서류 등	해당될 경우 제출

※ 필요시 위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진행일정(※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7. 유의사항

◆ 전대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사업 승계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미흡할 경우 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확인 또는 신청 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귀책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의 경우 경영지원금 지급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하게 선정된 경우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동일 내용을 he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와 수행업체는 본인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본인 부담금 대납, 제3자 부당개입 등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기간, 진행범위 등을 변경할 경우(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과물이 사전에 진행되었거나 他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0

<붙임>

1. 2020년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 관련서류

【참조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9.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